

# 보도자료

2015. 12. 14.



##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이진웅(☎02-3480-1368)
공보관실 ☎ 3480-1451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 위원 위촉식 및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2015. 12. 14.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1:00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5. 12. 14. 10:30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김재형,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이은재, 홍성준, 정용호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
- 제5차 정기회의
  - 2015. 12. 14. 11: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 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 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당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 □ 위원 위촉식

- 일시·장소 : 2015. 12. 14. 10:30 ~ 10:50 대법원 602호 회의실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김재형,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이은재, 홍성준, 정용호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제2기 회생·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위촉장 수여 위원 임기 2015. 11. 28. 시작)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위원	윤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연수원 16기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연수원 17기
변호사 위원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연수원 15기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연수원 23기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대학교수 위원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수원 18기
행정공무원 위원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행정고시 30회
금융전문가 위원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 위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 □ 제5차 정기회의

- 일시·장소 : **2015. 12. 14. 11:00 ~ 12: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법원 도산실무 변화(보고안건),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심의·의결안건)**

## □ 건의문 의결

### ○ 건의문 전문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가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이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 임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소송구조 제도에 쉽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가 절차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채무조정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당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 ○ 건의문 주요내용

### ①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전제되는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소송구조제도에 친한 사건
- 현재 법원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제적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구조 실질화에 노력하고 있는데에서 더 나아가 소송구조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

### ②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개요

#### ▣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개인회생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고,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악성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

## -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도입 경과

- 2014. 5.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제도 악용실태와 악성 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연구반 운영 시작
- 2014. 9. 15. 서울중앙지법 전체 회생위원 간담회 개최 후 연구결과 발표
- 2014. 9. 19. ~ 20.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전국 도산 업무 담당 법관들과 연구결과 공유

## -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 조사방식의 이원화 : 중점관리트랙 vs. 패스트트랙
  - 사건 분류·관리를 유형화·세분화 ⇨ 악용의 위험성이 큰 사건은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분류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중점관리트랙)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패스트트랙)

## -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 - 브로커 체크리스트

- 법관 및 회생위원이 브로커 의심, 피해 적발 사항을 쉽게 체크해 넣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
- 법관 및 회생위원은 개별 사건을 처리하면서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쉽게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제출

### - 주된 체크 대상

- ① 채무자 등이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② 소송위임 과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③ 경미한 보정사항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시신청(금지명령)의 효과를 받는 경우

-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시행 경과

- [1차] 서울중앙지법, 2015. 1. 31. 서면경고, 관련 협회 통보(19인)
- [2차] 서울중앙지법, 2015. 8. 17. 2차 수사의뢰(30인), 징계요청(수사의뢰자 포함 58인) 및 서면경고(35인)

③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전자소송은 사용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개인회생·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④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당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인채무자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있도록 유도

⑤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 일정한 사건에 대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일정한 요건 하의 의심사건에 대해 인가결정시 주기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불특정사건 심사 : 법원의 판단에 의해 주기적으로 불특정사건을 선별한 후 변제진행 경과, 변동사항을 등을 체크

○ 건의문 채택 의의

- 법원은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임
-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더 나아가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 조성이라는 사회 안전판 제공과 이를 토대로 한 경기 활성화와 국민 경제 안정이

라는 사회·경제적 효용을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는 절차 전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 참고 : 회생·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

### ○ 개요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 11. 28. 법원행정처에 설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 제1차 정기회의(2013. 11. 28.)

-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

### ○ 제2차 정기회의(2014. 4. 22.)

-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 제3차 정기회의(2014. 12. 17.)

-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

### ○ 제4차 정기회의(2015. 6. 16.)

-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